

I. 첫머리에

미국은 전 세계에서 표현과 발언의 자유가 매우 높은 국가 중 하나이다. 언론사는 국민이 알아야 하는 사항을 보도하는 기관으로서 정부나 의회가 표현의 자유, 출판의 자유를 제한할 수 없다는 수정헌법 1조 아래에서 여러 법적, 정책적 제약이나 소송으로부터 보호받아 왔다. 이는 다른 국가와 비교할 때 미국 내 언론사의 발언의 자유를 제약할 수 있는 기관이나 정책이 부재한 이유다. 하지만 미국 내에서도 언론 보도로 인한 갈등이나 피해는 꾸준히 존재해왔다. 이를 중재하기 위해 1973년부터 11년간 언론사와 다른 집단, 공인이나 일반 개인 간의 갈등을 조정하는 기관이 존재하기도 했으며, 언론사를 상대로 한 명예훼손 소송 역시 빈번하게 제기되어 왔다. 최근 가짜뉴스와 알고리즘을 이용한 기사 생산 등의 변화는 언론사에 대한 명예훼손 소송을 둘러싸고 또 다른 법적 쟁점 및 갈등을 만들어내고 있다.

미국 내 언론 보도로 인한 피해 관련 정책 및 법에 대한 검토라는 큰 주제 하에 먼저 본 글은 과거 미국 내 언론 보도로 인한 피해를 구제하고 갈등을 조정하는 임무를 수행했던 국가 뉴스 위원회(National News Council)를 소개할 예정이다. 해당 기구는 언론에 대한 사람들의 불만 해결이나 언론의 책임과 자유 보장을 위해 창설되었고, 11년간 존속했다. 뉴스 위원회는 주 단위로도 존재했으나, 본 글에서는 국가 단위로 존재했던 국가 뉴스 위원회에 집중해 설명할 예정이다. 국가 뉴스 위원회는 해당 기구가 언론의 자율성을 훼손할 수 있다는 언론사의 반발로 인해 사라졌다. 이러한 주장을 뒷받침하는 가장 큰 근거는 발언과 언론을 포함한 출판의 자유를 보장한 수정헌법 1조(First Amendment)였다.

그 뒤 미국 내 언론에 대한 불만 제기는 주로 소송을 통해 이루어졌다. 본 글에서는

* 미국 미네소타대학교 저널리즘 스쿨 박사과정, kjs8918@gmail.com

그 중 수정헌법 1조와 가장 빈번하게 충돌하며 언론사와 개인 간 분쟁 요소가 되었던 명예훼손을 중심으로 관련 법제를 검토하고자 한다. 그 뒤 언론사에 제기된 명예훼손(Defamation)의 최근 소송 관련 판례를 소개할 것이다. 글 말미에서는 디지털 기술의 발달과 함께 최근 문제시된 가짜뉴스(fake news)와 언론사의 자동화 저널리즘(automated journalism)을 둘러싼 법적 쟁점을 검토하며 글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II. 언론분쟁 조정기관

1. 국가 뉴스 위원회

국가 뉴스 위원회는 미국에서 언론 보도로 인한 피해를 조정하고 언론의 자율성과 책임감을 보장하기 위해 1973년부터 1984년까지 운영되었던 독립적인 기구다. 1971년 미국 내에서는 언론에 대한 비판적인 시각이 대두되었고 언론 보도로 인한 분쟁이나 갈등을 조정할 수 있는 기구의 필요성이 처음 제기되기 시작했다(McKay, 1977). 이를 기반으로 1972년 미디어의 보도나 뉴스 배포의 자유를 제한해야 한다는 대책 위원회(Task Force)가 등장했다. 대책 위원회는 국가 내 언론에 대한 불만을 조정하거나 언론의 보도를 감독할 기관 내지는 체계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에 착안해 국가로부터 독립적인 사적 위원회를 만들고자 했다(McKay, 1977). 이러한 배경 속에서 1973년 8월 1일 국가 뉴스 위원회가 처음 운영되었다. 미디어와 공중의 시각 모두를 위원회의 결정과 논평에 반영하기 위해 국가 뉴스 위원회는 일반인과 언론사의 일원으로 구성되었다.

국가 뉴스 위원회의 목표는 언론의 활발하고 책임감 있는 보도로 언론과 공중 간의 심이나 불신을 사라지게 하는 것이었다(McKay, 1977). 구체적으로 국가 뉴스 위원회는 뉴스 보도의 정확성과 공정성에 대한 불만을 받고, 점검하고, 발표하는 역할을 했다. 동시에 언론의 자율성과 관련된 논평 역시 내보냈다. 국가 뉴스 위원회는 출범 후 약 11년 동안 뉴스 보도에 대한 공중과 뉴스 미디어의 수백 건의 불만을 처리했고, 227건의 보도에 대해 의견을 제시했다(Ugland, 2008).

하지만 국가 뉴스 위원회는 언론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언론사의 부정적인 시각과 법적 강제성의 부재로 인해 오랜 기간 존속하지는 못했다. 뉴욕 타임스를 포함해 국가 뉴

스 위원회를 반대했던 사람들은 뉴스 위원회의 규제가 언론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훼손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대부분의 언론사나 기자들은 언론이 자율적으로 스스로를 규제할 수 있다고 믿었으며, 그들은 위원회의 논평이 아닌 독자가 원하는 방식 내지는 언론사 내 관행을 따라 보도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했다. 언론사에 불만이 제기됐을 때 뉴스 위원회가 이를 중재할 수 있다는 주장에도 언론사와 기자들은 회의적이었다. 저널리즘의 역할을 언론사와 기자가 아닌 다른 단체 내지는 사람이 수행한다는 것 역시 반감을 자아냈다(Ugland, 2008). 즉, 대다수의 언론사나 기자들은 해당 위원회의 존재를 달가워하지 않았으며, 스스로 저널리즘의 공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는 태도를 고수했다.

하지만 국가 뉴스 위원회를 지지하는 입장에서는 뉴스 위원회가 언론이 공중에게 신뢰를 얻고 책임성을 갖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고 생각했다. 이러한 입장에서는 언론 보도로 인한 피해를 조정하기 위해 독자가 편집자에게 편지를 보내 기사 수정을 요청하는 방식이 영향력이 작은 데 비해 언론사에 개인이 소송을 제기할 경우 고소인, 기자, 언론사 모두가 물질적, 감정적으로 막대한 비용을 지급해야 하는 비효율적인 상황이 벌어진다고 보았다. 따라서 이를 중재할 수 있는 합리적인 기구로 국가 뉴스 위원회를 지지했다(Jenkins, 1997).

2. 국가 뉴스 위원회의 구조와 역할

국가 뉴스 위원회에는 언론에 대한 불만을 주로 처리하는 불만 처리 위원회와 언론의 자유와 관련된 사항을 다루는 언론 자유 위원회가 존재했다. 두 세부 위원회는 사건이 접수되면 이를 검토해 전체 위원회에 상정할 사안을 결정했다. 불만 처리 위원회에서는 언론에 대한 불만 사례를 세부 원칙에 근거해 상정 가치가 있는지를 판단했다. 먼저 위원회는 해당 기사에 들어있는 의견이 사실 정보에 바탕을 두고 있는지를 검토하고, 기사에 언급되어야 하는 중요한 정보가 빠지지 않았는지를 확인했다. 예를 들어 위원회는 기사의 인용문에서 특정 사항이 언급되지 않아 문장의 의미가 왜곡되지 않았는지를 살폈다. 마지막으로 위원회는 언론사가 이름이 밝혀지지 않은 출처를 과도하게 사용하지 않았는지 여부를 검토했다(McKay, 1977). 해당 사건이 전체 위원회에 상정되면 국가 뉴스 위원회는 사건을 확인 후 갈등을 조정하거나 의견을 발표했다.

국가 뉴스 위원회의 구조와 관련해 먼저 국가 뉴스 위원회가 어떠한 강제적인 권력도 행사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주의 깊게 볼 필요가 있다. 국가 뉴스 위원회는 그들이 발표한 논평에 언론사나 기자, 불만을 제기한 당사자가 동의하게끔 강요하거나 추가적인 증거를 제시하도록 강제할 수 없었다. 이는 국가 뉴스 위원회의 갈등 조정 능력의 한계로 위원회의 역할에 대한 회의적인 시각의 근거가 되었다. 또한, 국가 뉴스 위원회가 정부 산하 기관이 아닌 독립적인 기구로 존재했다는 점 역시 중요하다. 미국 내에는 정부나 의회가 표현의 자유, 출판의 자유를 저해할 수 없다는 수정헌법 1조가 존재한다. 사람들은 국가 뉴스 위원회가 정부에 소속되어 있을 때 수정헌법의 정신이 침해될 수 있음을 염려했다.

국가 뉴스 위원회에 반대하는 입장에서는 위원회가 주요 언론사를 탄압하는 역할을 한다고 주장했는데 이러한 시각이 사실인지를 검증하기 위해 어글랜드(Ugland, 2008)는 국가 뉴스 위원회가 제시했던 서면 의견 자료를 분석했다. 분석 결과 그는 국가 뉴스 위원회가 언론사, 특히 방송사에 대해 매우 우호적인 태도를 보였음을 밝혀냈다. 어글랜드(Ugland, 2008)에 따르면 CBS는 34건의 불만 사례 중 29개에서 국가 뉴스 위원회의 지지를 얻었으며, ABC는 17개의 불만 접수 사례 중 16개에서 위원회의 우호적인 의견을 받았다. 국가 뉴스 위원회에 가장 비판적인 입장을 보인 뉴욕타임스 역시 접수된 21건의 불만 중 14건에서 우호적인 평을 받았다.

국가 뉴스 위원회에 소속되어 있는 일반인과 미디어 구성원의 투표 결과를 비교할 경우 미디어 관련 소속 일원이 언론사에 상대적으로 우호적인 평가를 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하지만 어글랜드(Ugland, 2008)는 두 집단이 결정을 내리는 원칙이나 메커니즘은 유사했다고 주장한다. 다른 흥미로운 사실은 국가 뉴스 위원회의 서면 의견 대부분에 수정헌법 1조가 언급 내지는 인용되었다는 점이다(Ugland, 2008). 하지만 국가 뉴스 위원회가 구체적인 법 전문을 언급하는 경우는 드물었다. 이는 위원회가 법적 강제력을 가지고 있지 않았기 때문이다. 국가 뉴스 위원회는 그들의 서면 의견에서 윤리적인 권고인지 법적 권고인지에 대해서는 모호한 태도를 보였다.

법적 강제력의 부재와 언론사의 회의적인 시각으로 인해 국가 뉴스 위원회는 오랜 기간 존속하지는 못했다. 그 뒤 언론에 대한 불만 제기는 주로 언론사의 자율 규제나 소송을 통해 이루어져 왔다. 앞서 언급했듯이 본 글에서는 그 중 언론사의 보도에 따른

명예훼손 소송과 관련해 수정헌법 1조와 관련 법제 및 판례를 집중적으로 검토하고자 한다.

Ⅲ. 언론분쟁 관련 법제 검토

1. 수정헌법 1조

미국의 수정헌법 1조는 개인의 표현의 자유 내지는 권리를 지키기 위한 목적으로만 들어졌다. 수정헌법 1조에 따라 미국의 의회는 종교의 설립이나 종교 활동의 자유, 발언과 출판, 집회, 정부에 탄원할 수 있는 자유를 제약하는 어떠한 법도 만들 수 없다(Olson, 2017). 여기서 출판의 범주에는 언론사의 보도도 포함된다. 즉, 언론사의 자유로운 보도를 보호함으로써 해당 법안은 정부의 권력 남용을 제약하거나 진실 추구를 장려하고자 한다(Trager, Ross, & Reynolds, 2016). 미국 내 수정헌법 1조의 존재는 언론사의 보도에 가해질 수 있는 제약을 막는 가장 큰 보호막이 되어왔다.

수정헌법 1조에서 보호하는 발언(speech)과 출판(press)의 자유는 각각 입으로 전해지는 말(the spoken word)과 쓰인 글(the written word)을 뜻한다. 초기에 이 둘은 분명히 구분됐으나 최근 미디어 기술의 발달로 사진과 동영상을 포함한 다양한 커뮤니케이션이 등장하며 둘 간의 경계가 흐려졌다(Olson, 2017). 또한, 시민기자의 출현은 언론과 비언론의 경계를 불분명하게 만들었고, 미디어가 아닌 기업이 소유하는 언론, 영화, 텔레비전 쇼가 등장하며 법원은 수정헌법 1조의 보호를 받는 출판의 자유의 대상을 정의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Trager et al., 2016). 일반적으로 법원은 언론 보도부터 페이스북 게시물에 댓글을 달거나 “좋아요”를 누르는 행위 등의 모든 종류의 표현(expression)을 수정헌법 1조의 보호 하에 두고 있다(Olson, 2017).

하지만 수정헌법 1조가 항상 절대적인 것은 아니며, 말하는 대상, 발언의 종류, 사용하는 매체 등에 따라서 제한의 여지가 존재한다(Olson, 2017). 수정헌법 1조에서 보호하는 자유는 일반인이 아닌 공인(public figure)이나 제한적 공인(limited-purpose public figure)에 한해 제한된다. 예를 들면, 언론사가 공인이나 제한적 공인이 아닌 일반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진술을 포함한 보도를 내보냈을 경우 고소인이 언론사의 과

실을 입증한다면 언론사에 본인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이유로 손해배상금을 요구할 수 있다.

예외적이지만 언론사의 보도가 사회에 큰 해악을 끼칠 것이 분명하거나 뉴스 미디어가 허용되지 않은 정보에 접근하기 위해 범죄를 저질렀을 때는 언론사의 보도가 이루어지기 전에 정부 관료가 이를 제한할 수 있다. 특히 국가 안보와 관련해서는 발언이나 출판의 자유를 제약하는 많은 하위법이 존재한다. 위와 같은 사전제재에 대법원은 대부분 부정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Trager et al., 2016).

2. 명예훼손

수정헌법 1조에서 보호하는 언론사의 출판의 권리와 가장 많이 충돌하는 다른 법적 관념은 명예훼손이다. 명예훼손에 포함되는 두 가지 불법행위에는 글 또는 문서에 의한 중상인 라이블(libel)과 말로 인한 비방인 슬랜더(slander)가 있다. 명예훼손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법적 요건이 필요하다. 라이블의 예를 들면, 먼저 고소인은 본인에 대한 진술이 어떻게 고소인의 다른 사람과의 현재 또는 미래 관계에 피해를 주었고 공적 이미지를 부정적으로 만들었는지를 입증해야 한다(Youm, 2017). 즉, 명예훼손이 성립하기 위해서 고소인은 실제로 자신이 피해를 보았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한다. 또한, 언론사에 대한 명예훼손에서 승소하기 위해서 고소인은 해당 진술을 제3자가 보았으며, 이로 인한 명예 실추가 발행인의 실수 때문이라는 점을 보여주어야 한다. 고소인은 해당 진술이 거짓에 기초해 있고, 고소인의 명예를 훼손할 수 있는 (악물 복용이나 성추행 등과 같은) 사실을 포함하고 있다는 것 역시 밝혀야 한다. 법원은 맥락상 중요한 사실이 진술에서 빠짐으로써 고소인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경우도 명예훼손의 사례로 포함하고 있다(Youm, 2017).

하지만 언론사에 대한 명예훼손에서 공인 내지는 제한적 공인이 승소하기는 쉽지 않다. 언론의 출판의 자유를 보호하는 수정헌법 1조가 존재하기 때문이다. 수정헌법 1조와 명예훼손이 충돌할 경우 법원은 고소인 당사자가 공인이나 제한적 공인인지와 해당 진술이 사회적으로 중요한 사안인지를 먼저 고려한다. 고소인이 공인 내지는 제한적 공인인 경우 언론사를 상대로 명예훼손 소송을 승소하기 위해서는 언론사가 “현실적 악의

(actual malice)”를 가지고 고소인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점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하다. 물론 보도가 책임성 있게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이 언론사가 의도적으로 거짓을 보도했거나 진실을 묵인했다는 현실적 악의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입증해주지는 않는다(Trager et al., 2016).

1964년 미국 뉴욕타임스(New York Times)와 설리번(Sullivan) 간의 소송은 언론사가 현실적인 악의를 가지고 허위 사실을 보도한 것이 아닐 경우 공인은 언론사를 상대로 명예훼손을 주장할 수 없다는 것을 처음으로 분명히 한 판결이다(*New York Times v. Sullivan*, 1964). 해당 판례는 언론사가 민주 사회에서 감시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도록 장려되어야 한다는 주장에 기초해있다. 아래 <사례>는 해당 소송에 대해 트래거(Trager)와 동료 학자들의 책 (2016)과 뉴욕타임스 대 설리번(*New York Times v. Sullivan*, 1964) 판결을 참고하여 설명하고 있다.

<사례> 뉴욕타임스와 설리번 간의 라이블(libel) 소송

1960년대 미국 남부에서는 흑인의 권리를 찾기 위한 시민운동이 빈번하게 발생했다. 하지만 그 당시 시위 지역인 남부의 지역 언론에서는 이런 시위를 크게 다루지 않았다. 대신 뉴욕타임스와 같은 주요 언론사에서는 이를 종종 보도했다. 그러던 중에 한 시민운동 단체가 남부 지역 경찰이 평화적인 시위를 폭력적이고 불법적으로 진압했다는 내용을 뉴욕타임스 전면 광고에 실었다. 해당 광고에 사실이 아닌 정보가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당시 앨라배마 주 몽고메리 경찰서 설리번 서장은 이에 뉴욕타임스에 언론사의 재정 상태를 위협할 수 있는 50만 달러의 손해배상을 청구한다. 비록 광고에는 설리번의 이름이 언급되어 있지 않지만, 설리번은 해당 광고에 등장하는 불법적이고 폭력적인 방법으로 시위를 진압한 사람이 본인이라고 유추할 수 있는 여지가 존재한다고 주장했다. 앨라배마 지방 법원과 주 대법원으로 이어진 소송에서 뉴욕타임스는 계속 패소했다.

하지만 연방대법원은 설리번이 공인이라는 점을 고려했을 때 명예훼손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더 높은 기준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판단했다. 연방대법원은 앨라배마 주 대법원의 결정을 뒤집으며 그 근거로 정부 관료에 대해 비난했다는 이유로 언론사를 처벌하는 것은 수정헌법 1조에 위반된다고 언급했다. 이 사례는 수정헌법 1조가 명예훼손 소송에 적용된 첫 번째 사례였다. 법원은 언론사가 실수로 보도에 오류를 포함했다는 이

유로 처벌당한다면 다른 언론사들이 소송이 두려워 보도를 자제하게 되고, 정부를 비판할 언론의 자유가 제약될 수 있다고 보았다.

해당 사건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고소인은 뉴욕타임스가 전면 광고를 실을 당시 해당 정보가 사실이 아니라는 점을 알고 있었거나 진실을 묵인했다는 점, 즉 현실적 악의를 입증해야만 했다. 공인 내지는 공적 관료는 뉴스 미디어를 통해 자신의 입장을 밝힐 수 있기 때문에 소송 외의 다른 방법을 통해 해당 정보를 정정할 수 있다는 점 역시 판단에 고려되었다.

그 뒤 공인이나 논쟁 사안과 관련 있는 제한적 공인은 피고인인 언론사가 현실적 악의를 가지고 고소인의 명예를 훼손했는지를 입증해야 했다. 단순히 정보를 확인하지 않고 재보도하거나, 출처의 신뢰도를 확인하지 않았거나, 해당 정보가 사실이 아닌 혐의라는 점을 말하지 않았다는 점, 저널리즘 하에서 받아들여질 수 있는 인용문의 의도적 수정 등은 언론사의 공인에 대한 명예훼손의 현실적 악의를 증명하기에는 충분하지 않다(Lewis, Sanders, & Carmody, 2018). 현실적 악의를 증명하기 위해서 고소인은 보도의 매 단계 언론사가 어떻게 진실을 보도하려고 노력하지 않았는지를 구체적인 증거와 함께 설명해야 한다. 하지만 고소인이 공인이나 제한적 공인이 아닌 경우에는 고소인은 현실적 악의를 입증할 필요가 없고 언론사의 부주의한 과실(negligence)을 보여주는 것만으로 언론사에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다.

명예훼손 소송을 당했을 경우 이를 반박하기 위해서 언론사는 해당 보도가 철저한 사실에 기반을 두었으며, 인터뷰가 해당 사건과 관련되어 있거나 이를 잘 알고 있는 사람으로부터 이루어졌고, 편견이 있는 정보에 기초하지 않았고, 보도가 신중하고 체계적으로 이루어졌으며, 다양한 관점이 보도에 고려되고 포함되었다는 사실을 입증하며, 사실이 아닌 정보에 대해서는 수정할 의사가 있다는 것을 밝혀야 한다(Trager et al., 2016). 또한, 고소인에 대한 어떠한 악의적인 감정이 없다는 사실 역시 입증하는 것이 중요하다.

수정헌법 1조는 지난 50년 동안 언론사를 명예훼손 소송의 위협으로부터 보호해왔으며 이는 미국을 다른 국가와 비교해봤을 때 표현과 발언의 자유가 굉장히 높은 국가로 만들었다(Lewis et al., 2018). 이에 더해 언론사는 법으로 보도에 관한 몇 가지 특권을 보장받고 있다(Trager et al., 2016). 먼저, 공정한 보도의 특권(Fair Report

Privilege)은 기자가 공식적인 기록에 기초해 보도한 경우 명예훼손 소송의 위협에서 보호해주는 제도다. 이 특권을 보장받기 위해서 언론사의 보도는 공적 기록을 공정하고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어야 한다. 또한, 기록의 출처 역시 보도에 언급되어야 한다. 중립적 보도의 특권(Privilege of Neutral Reportage)은 신뢰할 만한 단체가 공적 인물에 대한 비난이나 고발을 한 경우, 언론 매체가 이를 인용해 보도하였다면 후에 그 고발이 거짓으로 판명 나더라도 명예훼손 책임을 피할 수 있게 해주는 제도다. 이는 정보가 자유롭게 흐르는 것을 보장하기 위함이다(Trager et al., 2016). 보도는 공적 인물에 대한 고발을 담고 있어야 하며, 고발 내용 자체도 뉴스 가치가 있어야 한다. 보도는 반대 입장에 대한 내용 역시 포함하는 중립적인 논조로 이루어져야 하며 즉, 공정하고 정확해야 한다.

이밖에 미국의 법은 언론사가 AP와 같은 통신사의 보도를 인용할 경우 인용된 진술에 대해 발생하는 명예훼손의 책임을 피하는 통신사 기사 인용 면책주장(Wire Service Defense) 역시 명시하고 있다. 이 주장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인용한 문구 내지는 진술이 신뢰할 수 있는 통신사의 것이어야 하며 인용 당시 언론사는 해당 보도가 사실이 아님을 모르고 있어야 하고 통신사의 보도를 자의적으로 바꾸어서는 안 된다(Trager et al., 2016).

IV. 언론분쟁 관련 최근 판례 동향

위에서 검토한 관련 법제 사항을 기반으로 아래에서는 미네소타 대학교에서 2017년 가을 발간한 실라 블루틴(Silha Bulletin, 2017)에 소개된 언론사에 대한 명예훼손 관련 소송 사건에 대해 여러 자료를 참고해 요약, 소개할 것이다.

1. 에릭 볼링(Eric Bolling)의 프리랜서 기자에 대한 명예훼손 소송

2017년 8월 4일 프리랜서 기자 야샤르 알리(Yashar Ali)는 폭스 뉴스 채널 호스트 에릭 볼링(Eric Bolling)이 동료에게 성적 불쾌감을 자아낼 수 있는 사진을 문자로 보냈다는 혐의를 허핑턴포스트에 보도했다. 알리는 볼링의 전·현직 동료를 포함한 14명

의 비공식적인 출처를 통해 기사를 작성했으며 획득한 정보 확인을 위해 볼링과도 접촉을 시도했다고 말했다. 같은 해 8월 9일, 볼링은 알리에게 명예훼손을 이유로 5천만 달러의 소송을 제기했다. 소환장에서 볼링은 알리가 의도적으로 성급하게 잘못된 정보를 전달함으로써 자신의 명성을 훼손했다고 주장했다.

포춘에서 보도한 바에 따르면 알리는 소환장을 받은 사실을 트위터에 공유하며 자신의 기사와 출처들을 보호하겠다고 밝혔고, 볼링 역시 트위터에서 자신에게 오는 지지에 감사하다며 기사에서 그의 이름을 지워 달라고 재차 요구했다. 해당 기사가 게재되었던 허핑턴포스트는 알리가 14개의 출처를 확인했다는 사실과 그가 신중하게 보도했다는 점을 강조하며 알리를 보호하려는 태도를 보였다(Bach, 2017).

실라 블루틴(Silha Bulletin, 2017)의 정리에 따르면 알리의 변호사는 볼링의 변호사와 폭스 뉴스의 법률팀에 알리의 기사가 의도적으로 “잘못되고 호도하는” 정보를 포함했다는 사실이 확인되지 않았고, 알리가 14개의 출처를 통해 그의 정보를 철저하게 확인했다는 점을 강조했다. 또한, 알리의 변호사는 볼링의 소송이 알리 개인을 괴롭히고 위협하는 용도라며, 본인의 홍보 내지는 평판 관리를 위해 소송을 제기했고, 알리의 진실 추구를 위한 노력을 보복하려는 의도가 엿보인다고 주장했다. 같은 해 9월 폭스 뉴스는 볼링이 진행해오던 쇼를 폐지했다. 2018년 여름 현재 해당 소송은 아직 진행 중인 것으로 보인다. 해당 사건은 미디어 관련 종사자들 간에도 보도로 인한 명예훼손 소송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예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미디어 종사자 간 명예훼손 소송에 대해서는 결국 장래의 자신의 발언 내지는 출판의 자유를 제약시킬 수 있다는 우려의 시선 역시 존재한다.

2. 미국 제5순회 항소 법원의 뉴욕타임스에 대한 명예훼손 소송 재심

2017년 8월 15일 미국 제5순회 항소 법원(루이지애나주 뉴올리언스)은 뉴욕타임스에 월터 블록(Walter Block)이 제기한 명예훼손 소송에 대해 지방 법원이 내린 판결을 뒤집었다. 로이터의 보도에 따르면, 2014년 1월 뉴욕타임스는 자유주의자인 켄터키 주 상원의원 랜드 폴(Rand Paul)의 대선 입후보 가능성과 관련된 기사에서 로올라 대학교에서 경제학을 가르치는 교수 블록이 “노예 제도는 비자발성을 제외하면 나쁘지 않

다”고 말했다며 그가 공민권법(Civil Rights Act)에 반대하는 것처럼 발언을 인용했다 (Stempel, 2017). 보도는 블록의 발언을 두 번 인용했는데 첫 번째 인용에서는 그를 “한 경제학자”로 표현했고, 두 번째 인용에서는 그의 이름과 소속을 밝혔다. 블록은 뉴욕타임스가 맥락을 고려하지 않고 그의 발언을 인용함으로써 자신을 인종 차별주의적인 시각을 가진 사람처럼 묘사했다고 주장하며 사실이 아닌 정보를 보도했다는 이유로 지방 법원에 명예훼손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뉴욕타임스는 블록의 소송을 루이지애나의 반(反)전략적 봉쇄소송(Anti-SLAPP: Anti-Strategic Lawsuit Against Public Participation) 법률을 이용해 공격했다. 반(反)전략적 봉쇄소송 법률은 공적 이슈에 대한 개인의 표현의 자유를 보호하기 위해서 공직자가 시민과 언론을 상대로 제기한 명예훼손이 (법원이 판단하기에) 승소할 확률이 적은 경우 소송을 각하하거나 약식판결로 기각하는 방침을 뜻한다. 이는 언론이나 개인이 해당 소송 과정에서 법적 방어 비용 등을 이유로 피해를 보는 것을 막기 위함이다. 또한, 언론사들이 소송에 대한 두려움을 느끼게 되어 보도에서 표현의 자유가 제약되는 것 역시 방지하려는 목적에서 비롯되었다(Silha Bulletin, 2017). 지방 법원은 블록이 해당 진술이 거짓 정보를 포함하고 있다는 점을 밝히지 못했다는 뉴욕타임스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블록은 이를 제5순회 항소 법원에 제기했다. 2017년 8월 15일 판결에서 항소 법원은 반(反)전략적 봉쇄소송에 대한 뉴욕타임스의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게 하려면 블록은 해당 진술이 어떻게 그의 명예를 훼손했고 거짓 정보를 포함하고 있는지를 말해야 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법원은 뉴욕타임스가 중요한 맥락을 생략하고 진술을 인용함으로써 문장의 의미가 왜곡되었고, 결과적으로 그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블록의 주장에도 동의했다. 또한, 뉴욕타임스가 첫 번째 인용 문구에서 블록의 이름을 공개하지 않고 ‘한 경제학자’로 표현했다고 해도, 독자는 그 경제학자가 다음 인용 문구에서 등장하는 블록이라는 것을 유추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즉, 뉴욕타임스에게 현실적 악의가 있었다는 블록의 주장이 그르다고 판단하기는 아직 이르다는 관점이다.¹⁾

1) 보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에서 확인 가능하다:

<https://cases.justia.com/federal/appellate-courts/ca5/15-30459/15-30459-2016-03-07.pdf?ts=1457397031>

해당 항소 판정 결과 때문에 뉴욕타임스는 문제된 보도가 노예제도에 대한 블록의 생각을 정확하게 전달하였고, 만약 실수가 있었다면 현실적 악의가 없었다는 점을 지방 법원에서 다시 입증해야 한다. 법률 관계자들은 해당 판결로 인해 반(反)전략적 봉쇄 소송 법률이 그동안 여러 법적 소송을 막아올 수 있었던 점 내지는 지금껏 지켜온 표현의 자유가 흔들리는 것이 아닌지에 대한 우려의 시선을 보내고 있다(Silha Bulletin, 2017).

3. 버지니아대학교 학장의 롤링스톤에 대한 명예훼손 소송 합의 도달

언론사의 잘못된 보도로 피해를 본 대표적인 사례로 미국 대중문화 전문지 롤링스톤에 대한 버지니아대학교 학장 니콜 에라모(Nicole Eramo)의 명예훼손 소송을 언급할 수 있다. 롤링스톤은 2014년 11월 19일, “캠퍼스 내 성폭행(A Rape on Campus)”이라는 제목으로 버지니아대학교의 한 학생이 남학생 사교클럽 파이 카파 사이(Phi Kappa Psi)가 주최하는 파티에 참석했다가 집단 성폭행을 당했다는 내용을 자세하게 보도했다. 기사는 에라모 학장을 포함한 대학교 직원을 비난했고 그 후 국내외의 많은 언론사가 이를 인용해 보도했다.

하지만 그 뒤 다른 언론사들은 사건의 사실관계와 기사를 작성한 사브리나 어들리(Sabrina Erdely)의 보도 방법에 의문을 제기하기 시작했다. 먼저 기자 어들리가 피해자와 학교 관계자들과는 여러 차례 이야기를 나누었지만, 가해자들과는 접촉하지 않은 것이 타당한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었다(Yu, 2014). 그 뒤 파이 카파 사이의 회장은 그런 일이 일어났다는 소식을 들은 바 없다며 기사의 정확성을 의심하는 논평을 냈다. 결과적으로 피해자가 진술했던 성폭행 사건은 발생하지 않았던 것으로 밝혀졌다.

그 뒤 롤링스톤의 편집장은 사과문을 내보내고 기사를 삭제했다. 또한, 콜롬비아 저널리즘 스쿨에 해당 기사의 오류 및 보도 과정에서 일어난 실수에 관한 보고서를 작성해 달라고 요청했다. 2015년 4월 5일 나온 보고서는 기자 어들리가 신뢰성이 확보되지 않은 피해자의 진술만을 듣고 기사를 작성했고, 피해자의 진술을 증명할 수 있는 중요한 정보가 확인되지 않은 상황에서 편집장이 기사를 내보내기로 한 점 등을 문제로 지적하며 기사의 작성, 편집, 편집장의 감독, 사실관계 확인 과정에서 저널리즘의 기본

원칙이 지켜지지 않았다고 비판했다(Coronel, Coll, & Kravitz, 2015).

2015년 5월과 6월, 버지니아대학교 학장 에라모와 파이 카파 사이의 전 회원 3명은 롤링스톤, 롤링스톤의 모회사인 웨너미디어, 기사를 작성한 기자 어들리에 대해 명예훼손 소송을 제기했다.²⁾ 에라모는 기자 어들리가 작성한 롤링스톤의 보도가 본인의 명성을 훼손했다고 지적했으며, 그 뒤 이어진 어들리의 인터뷰 기사에서도 그녀의 발언이 잘못 인용되어 있었다는 점을 지적했다(Silha Bulletin, 2017). 그녀는 어들리가 해당 정보가 사실이 아니라는 점을 알고 있었음에도 진실을 묵인했으므로 현실적 악의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판사는 의견서(Memorandum Opinion)에서 기자 어들리가 해당 사건과 관련해 고소인에 대해 다른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사람들의 말을 듣지 않았으며, 피해자인 학생을 발견한 사람에 대한 정보가 있었음에도 그 사람과 접촉하지 않았다는 점, 피해자가 진술에서 지목한 가해자와 접촉을 시도하지 않았다는 점, 피해자의 진술을 보증해줄 수 있는 사람과도 접촉하지 않았다는 점, 즉, 추가 조사를 할 수 있었음에도 정황적 증거만으로 기사를 작성했다는 사실이 어들리가 현실적 악의를 가지고 기사를 작성했다고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고 보았다. 또한, 피해자가 계속해서 진술을 바꾸는 와중에 이에 대한 조사를 더 진행하지 않은 것 역시 현실적 악의를 보여주는 근거라고 판단했다(*Eramo v. Rolling Stone et al.*, 2016).

2016년 11월 배심원은 에라모에게 3백만 달러를 지급할 것을 결정했다. 그 뒤 비밀리에 진행된 합의 과정을 통해 에라모는 소송을 취하했다. 파이 카파 사이의 회원 역시 비록 그들의 이름이 기사에서 언급되지는 않았지만, 사람들이 그들을 가해자로 추정하여 본인들의 명예가 훼손되었다는 주장을 하며 롤링스톤에 명예훼손 소송을 제기했다(Silha Bulletin, 2017). 그들은 2천 5백만 달러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롤링스톤은 파이 카파 사이의 회원들에게는 165만 달러를 지급하기로 합의했다.

그 뒤 2016년 9월 롤링스톤은 지분의 49%를 싱가포르의 밴드랩에 매각했고, 웨너미디어의 다른 잡지 역시 2017년 3월 다른 미디어 그룹에 넘어갔다. 이는 부분적으로는

2) 워싱턴 포스트에서 고소장을 확인할 수 있다:

<https://www.washingtonpost.com/apps/g/page/local/eramo-vs-rolling-stone-complaint/1692/?noredirect=on>

해당 소송의 비용으로 인한 재정적 부담 때문으로 분석되었다(Nicolaou, 2016).

4. 멜라니아 트럼프(Melania Trump)의 영국 언론 데일리 메일에 대한 명예 훼손 소송

도널드 트럼프(Donald Trump) 미국 대통령의 부인 멜라니아 트럼프(Melania Trump)의 영국 언론 데일리 메일에 대한 명예훼손 소송은 국내 언론에서도 여러 차례 보도된 언론분쟁 사례다. 실라 블루틴(Silha Bulletin, 2017)의 정리에 따르면 2016년 8월 데일리 메일은 멜라니아 여사가 1990년대 전문 모델로 일하며 성매매를 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는 보도를 내보냈다. 그해 9월 멜라니아 여사는 데일리 메일과 데일리 메일과 비슷한 내용의 주장을 게시한 메릴랜드 블로거(blogger) 타플리(Tarpley)를 상대로 메릴랜드 주 법원과 영국 런던에 각각 소송을 제기했다. 멜라니아 여사는 메릴랜드 법원이 관할이 아니라는 이유로 이를 담당하지 않자 뉴욕에서 새로운 소송을 제기했다.³⁾

뉴욕타임스(2017)의 보도에 따르면 소송문에서 그녀는 백악관이나 미국 대통령 등 그녀의 지위를 직접적으로 나타내는 단어를 사용하지는 않았지만 대신 고소인이 세계에서 가장 많이 촬영되는 사람 중의 하나라는 점을 고려했을 때 해당 기사가 그녀의 브랜드 사업에 수백만 달러의 피해를 줬다고 주장했다. 또한, 멜라니아 여사는 소송문에서 데일리 메일이 그들의 주장을 뒷받침할 사실 정보가 부족했고, 그 주장을 반박해줄 사람들과 인터뷰할 기회가 있었음에도 하지 않았으며, 기사를 내보낼 때 데일리 메일이 해당 진술이 거짓일 수도 있다는 의심을 이미 가지고 있었다고 주장했다. 그녀는 1억 5천만 달러의 손해배상을 요구했다.

이후 데일리 메일은 자사 신문과 웹사이트에 멜라니아 여사가 성매매했다는 의혹을 입증할 아무 증거가 없다며 멜라니아 여사가 입은 피해에 대해 사과하는 사과문을 내보냈다(Bowcott & Watt, 2017). 런던 법원은 데일리 메일이 멜라니아 여사에게 3백만 달러 상당의 손해배상금액을 지급해야 한다는 결정을 내렸다. 가디언의 보도에 따르면 이는 런던 법원에서 처리한 명예훼손 손해배상 금액 중 가장 높은 액수라고 한다

3) 소송문은 아래 주소에서 확인할 수 있다:

<http://www.documentcloud.org/documents/3455911-Melania-DailyMail.html>

(Bowcott & Watt, 2017). 하지만 영국에서의 승소가 미국에서도 멜라니아 여사가 승소할 것이라는 점을 보장하지는 않는다. 본래 영국에서는 책임감 있는 보도를 위해 미디어에 대한 명예훼손에서 고소인이 승소하는 경우가 많고, 미디어에 높은 손해배상액을 지급하게 하는 경우가 많다. 미국에서 해당 명예훼손 소송을 승소하기 위해서 멜라니아 여사는 데일리 메일이 현실적 악의를 가지고 있었다는 점을 구체적인 증거와 함께 밝혀내야 한다. 대다수 저널리즘 교수 및 학자들은 멜라니아 여사가 공인이라는 점으로 미루어볼 때 해당 사건이 뉴욕타임스 대 설리번(*New York Times v. Sullivan*, 1964) 사건에서 성립된 현실적 악의 관련 판례를 바꿀 만큼 강력하지는 않다고 본다 (Silha Bulletin, 2017).

5. BPI의 ABC에 대한 명예훼손 소송

2012년 9월 미국의 비프 프로덕츠(이하 BPI)는 ABC가 2012년 3월부터 4월까지 11차례 방송한 “핑크 슬라임(Pink Slime)” 관련 보도에 대해 ABC, ABC뉴스, 뉴스 진행자 다이앤 소여(Diane Sawyer) 등을 명예훼손으로 제소했다.⁴⁾

ABC뉴스는 방송에서 쇠고기 도살 후 남은 고기를 암모니아 가스로 살균해 제조한 식품 LFTB(Lean Finely Textured Beef)를 핑크 슬라임이라 칭하며 해당 식품이 믿을 수 없는 재료를 사용했고 소비하기에 안전하지 않다고 보도했다. 로이터의 보도에 따르면 그 후 BPI는 운영하던 공장 4개 중 3개를 닫았으며, 수익 역시 80%나 감소했다고 한다(Mclaughlin & Huffstutter, 2017).

고소장에서 BPI는 LFTB는 USDA(U.S. Department of Agriculture)로부터 승인받은 안전한 식품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BPI는 ABC의 보도가 허위 정보를 포함하고 있다며 해당 보도가 가지고 있는 다섯 가지 문제를 지적했다. 먼저, BPI는 ABC 뉴스가 LFTB를 반복적으로 핑크 슬라임이라고 부르며 식품에 독성을 포함한 액체 물질인 슬라임이라는 이름을 붙여 식품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소비자들에게 심어줬다고 주장했다. 또한, ABC는 LFTB가 고기가 아닌 것처럼 설명했는데 이 역시 잘못된 설명이라

4) 소송문은 다음 주소에서 확인할 수 있다:

<https://consumermediallc.files.wordpress.com/2017/06/finalcomplaint1.pdf>

고 덧붙였다. 세 번째로, ABC가 LFTB가 낮은 품질의 제품인 것처럼 소개하며 개의 사료로 사용되기 위해 만들어진 식품으로 묘사하고, 다져진 소고기 사이에 알 수 없는 물질이 들어간 것처럼 표현한 것 역시 문제가 된다고 보았다. 네 번째로는 ABC가 LFTB가 영양가 없는 것처럼 묘사한 부분을 문제 삼았다. 마지막으로 ABC의 보도가 BPI가 USDA로부터 LFTB 제품에 대한 승인을 부적절하게 받은 것처럼 설명한 부분은 잘못되었다고 주장했다. BPI는 이에 대해 19억 달러의 손해배상을 요구했다.

ABC는 기사를 정정하거나 사과하지 않았다(Hauser, 2017). 또한, ABC가 직접적으로 LFTB를 안전하지 않다고 보도한 적이 없으며, 핑크 슬라임이라는 용어를 가장 먼저 사용한 것이 아니라는 점 역시 강조했다. ABC는 보도가 정확하게 이루어졌으며, 수정헌법 1조의 보호 하에 있다고 주장했다(Mclaughlin & Huffstutter, 2017). CNN Money의 보도에 따르면 재판은 2017년 6월 5일에 시작되었고, ABC가 자신의 입장을 변호하기 전 합의에 도달했다. ABC는 회사의 사업적 이익으로 인해 합의하지만, 보도는 정확하게 이루어졌으며 앞으로도 소비자들이 상품 구매에 대해 알아야 하는 진실을 찾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Kludt, 2017). BPI는 자사의 제품이 안전하고 영양소가 풍부하다고 다시 한 번 발표했다. 그 뒤 2017년 8월 뉴욕타임스를 비롯한 여러 언론사는 ABC의 모회사인 월트 디즈니가 합의 금액으로 1억 7천 7백만 달러를 지급했다는 사실을 보도했다(Hauser, 2017).

대다수의 미디어 전문 변호사와 교수들은 ABC의 결정에 아쉽다는 반응을 보였다(Silva Bulletin, 2017). ABC와 같이 소송을 진행할 능력이 되는 큰 모회사를 가지고 있는 미디어 기업 역시 합의금을 지급하며 재판을 종결하는 경우를 본 다른 개인이나 기업이 차후 미디어의 보도에 대해 더욱 쉽게 소송을 진행할 수 있기 때문이다. 조지아 법과대학에서 수정헌법 1조를 가르치는 소냐 웨스트(Sonja West) 교수는 로이터와의 인터뷰에서 이런 사례는 다른 언론사가 소송을 피하고자 민감한 주제에 대해 보도를 자제하는 결과를 만들어내게 되고 결과적으로 공중이 중요한 정보를 알지 못하게 되는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우려의 시각을 표했다(Mclaughlin, 2017).

6. 세라 페일린(Sarah Palin)의 뉴욕타임스에 대한 명예훼손 소송 기각

2017년 6월 27일 전 알래스카 주지사이자 2008년 미국 공화당 부통령 후보 세라 페일린(Sarah Palin)은 뉴욕타임스의 보도가 2011년 아리조나에서 발생한 민주당 하원의원 가브리엘 기퍼즈(Gabrielle Giffords)가 부상을 입은 총기 사고를 본인이 선동한 것처럼 보이게 했으며 뉴욕타임스를 명예훼손으로 제소했다. 워싱턴 포스트의 보도에 따르면 뉴욕타임스는 총기 사고가 발생하기 전 페일린의 정치 활동 단체가 민주당 위원들의 위치를 나타내는 지도를 공유했다고 보도하며 페일린이 총기 사고와 연관이 있는 것처럼 보도했지만, 실제 지도는 선거구를 나타낸 지도로 총기 사고와는 관계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보도 후 소셜미디어에서 사실관계에 대한 반박이 이어지자 뉴욕타임스는 해당 보도가 잘못되었음을 인정하고 기사를 수정했으며 트위터에서도 총기 사고와 페일린과 관련이 없다는 점을 밝혔다(Hawkins, 2017).

그 뒤 페일린은 뉴욕타임스가 거짓된 보도로 본인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주장하며 뉴욕 맨해튼 남부 지법에 명예훼손 소장을 제출했다. 페일린은 뉴욕 타임스가 페일린과 총기사고 간에 아무런 연관이 없다는 것을 알 수 있는 충분한 정보를 사전에 가지고 있었음에도 거짓 정보를 포함한 보도를 했다고 주장했다. 판사의 요청으로 뉴욕타임스 편집장 제임스 베넷(James Bennet)은 페일린을 의도적으로 비난하거나 명예를 훼손하고자 한 것이 아니라고 증언하며, 보도에서 해당 지도가 총기사고의 직접적 원인인 것처럼 묘사할 의도가 없었고 다만 지도는 당시 환경을 설명해주는 하나의 서술적 예로 포함된 것이라고 밝혔다(Ember, 2017).

최종적으로 뉴욕 맨해튼의 연방 판사 라코프(Rakoff)는 페일린의 뉴욕타임스에 대한 소송을 기각했다. 뉴욕 법 하에서 라이블 성립을 위해서는 다섯 가지 요소가 필요하다. 먼저, 고소인의 명예를 훼손한 진술이 고소인에 대한 것이어야 하고, 제3자에게 노출되어야 하며, 피고인(언론사)이 현실적 악의를 가지고 있었다는 점을 입증해야 하고, 해당 진술이 거짓을 포함하고 있어야 하며, 고소인에게 어떤 위해가 가해졌는지를 명확히 입증해야 한다.

라코프 판사는 소송을 기각하며 그 이유로 페일린이 뉴욕타임스가 의도적으로 진실을 묵인하거나 거짓을 보도했다는 현실적 악의를 입증할 구체적인 증거를 제시하지 못

했다고 언급했다. 또한, 베넷의 증언을 토대로 뉴욕타임스가 페일린을 비난할 의도로 기사를 작성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또한, 뉴욕타임스가 바로 실수를 정정했다는 점과 뉴욕타임스가 기사의 주장과 반대되는 자료를 하이퍼링크(hyperlink)를 통해 제시하며 공정하게 보도했다는 점 역시 소송 기각의 이유가 되었다.⁵⁾ 페일린은 2017년 11월 21일 제2순회 항소 법원에 이를 항소했다.

7. 아야두라이(Ayyadurai)의 테크더트(TechDirt) 보도에 대한 명예훼손 소송 기각

2017년 1월 4일, 이메일을 만든 것으로 알려진 시바 아야두라이(Shiva Ayyadurai)는 미국 IT 동향 관련 웹블로그 테크더트가 이메일을 만들었다는 자신의 주장이 거짓이라는 진술들이 포함된 14개의 기사를 2014년 9월부터 2016년 11월까지 내보내며 본인의 개인적, 직업적 명성을 훼손했다고 주장했다. 아야두라이는 테크더트가 현실적 악의를 가지고 기사를 작성했다고 언급하며, 본인의 사업 계약에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과 정서적 고통을 호소했다. 아야두라이는 소송문에 본인이 이메일을 만들었다는 주장을 뒷받침할 구체적인 정보를 포함하며 이메일의 역사를 다룬 여러 학술 저널과 언론 보도에서 이미 이 사실이 확인된 바 있다고 언급했다. 아야두라이는 1천 5백만 달러의 손해배상금을 요구했다.

2017년 2월 17일 테크더트를 소유하고 있는 플로어64와 기업 최고 경영자 마이클 매스닉(Michael Masnick)은 캘리포니아의 반(反)전략적 봉쇄소송 법률을 들어 소송 각하 신청을 냈다(Silha Bulletin, 2017). 앞서 설명했듯이 반(反)전략적 봉쇄소송 법률은 해당 소송이 공적 사안에 대한 표현의 자유와 관련되어 있을 때 고소인이 승소할 확률이 높지 않은 경우 소송을 각하하는 방침이다. 하지만 세일러(Saylor) 판사는 해당 소송이 매사추세츠 법의 적용을 받는다면 캘리포니아의 반(反)전략적 봉쇄소송 법률을 적용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캘리포니아는 일반적인 표현의 자유에 대해서도 반(反)전략적 봉쇄소송 법률을 적용할 수 있는 데 반해 매사추세츠는 개인의 청원권과 관련 있을 때만 해당 법률을 적용한다. 본 사건은 개인의 청원권과 관련되어 있지 않으므로 플

5) 전문은 다음 주소에서 확인 가능하다:

<https://www.documentcloud.org/documents/3983101-ruling-in-palin-times-suit.html>

로어64와 매스닉의 반(反)전략적 봉쇄소송 법률을 적용한 소송 기각 신청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⁶⁾

하지만 세일러 판사는 수정헌법 1조를 들어 해당 소송을 기각했다. 앞서 언급했듯이 수정헌법 1조는 언론사의 보도가 공인에 대한 공중의 알 권리와 관련된 명예훼손의 소송으로부터 언론사를 보호한다. 공인에 대한 명예훼손 소송에서 승소하기 위해서, 고소인은 피고인(언론사)이 해당 진술을 작성할 시 그 내용이 거짓임을 알고 있었거나 진실을 묵인했다는 현실적 악의를 증명해야 한다. 수정헌법 1조의 보호 대상에는 (참인지 거짓인지 판단이 가능한) 명백한 정보를 포함하지 않은, 다양한 해석이 가능한 주관적인 의견이나 진술 역시 포함된다.

판사는 아야두라이가 책을 출판하고 인터뷰를 진행한다는 점으로 미루어볼 때 제한된 공인의 범주에 해당하며, 이메일을 발명했다는 고소인의 주장이 여러 차례 기사에 등장하고, 독자들 역시 많은 답글을 달았다는 점에서 해당 사안이 공중의 알 권리와 관련되어 있다고 판단했다. 또한, 이메일을 발명했다는 고소인의 주장은 이메일을 고소인이 발명한 특정 기능을 보유한 프로그램으로 정의하는지 혹은 통신 시스템을 거친 편지 전송으로 넓게 정의하는지에 따라 사실 여부가 달라질 수 있고, 해당 진술이 사실을 기반으로 한 비난이 아닌 이메일을 개발한 사람이 누군지에 대한 주관적인 해석 내지는 가정이라는 점에서 명예훼손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마지막으로 판사는 고소인의 테크더트의 현실적 악의를 뒷받침할 구체적인 사실 증거를 제시하지 못했다고 언급했다.

매스닉은 테크더트를 통해 소송 기각 결정은 수정헌법과 표현의 자유의 승리를 보여준다고 말하면서도 반(反)전략적 봉쇄소송 법률이 적용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아쉬움을 표시했다. 그는 언론사에 소송 비용 자체는 큰 부담이 된다면 불필요한 소송으로 인해 표현의 자유가 위축될 수 있다고 주장하며, 모든 주에서 해당 법률이 더 강해져야 한다고 덧붙였다(Masnack, 2017).

6) 전문은 다음 주소에서 확인 가능하다:

<http://ia600807.us.archive.org/7/items/gov.uscourts.mad.185980/gov.uscourts.mad.185980.48.0.pdf>

8. 요약 및 정리

미디어 그룹, 언론사, 기자에 대한 명예훼손 소송은 빈번하게 발생한다. 하지만 위 사례들을 통해 볼 수 있듯이 미국 내 수정헌법 1조의 존재는 언론사가 명예훼손 소송에 휩싸이거나 막대한 손해배상금을 내는 것을 방지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또한, 반(反)전략적 봉쇄소송 법률은 언론사가 소송 비용에 대한 두려움으로 중요한 사안을 보도하지 못할 경우를 막기 위해 존재한다. 즉, 공인과 공중이 알아야 하는 사안에 대한 보도에 한해서 미국은 다른 국가에 비교해 언론사의 표현의 자유를 상당히 보장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Glasser, 2018; Lewis et al., 2018).

수정헌법 1조의 보호 하에 공인 내지 제한적 공인이 언론사에 대한 명예훼손 소송에서 승소하기 위해서는, 고소인은 언론사가 보도가 나가기 전 이미 해당 진술이 거짓임을 알았거나 진실을 묵인했다는 “현실적 악의”를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구체적인 증거 자료와 함께 밝혀내야 한다. 대체로 기존의 판례들은 고소인이 이를 구체적인 사실 정보로 입증하기 어렵다는 점을 보여준다. 하지만 롤링스톤의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언론사가 상대방의 입장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음에도 접촉하지 않았거나 신뢰성이 의심되는 출처의 정보만으로 보도를 작성하는 등 보도 과정 자체에 의문이 제기될 경우 법원은 언론사나 기자에게 현실적 악의가 있다고 판단하기도 한다. 그 경우 고소인에게 지급되는 손해배상은 매우 큰 편이다. 롤링스톤의 지분 매각은 언론사가 명예훼손 소송에서 합의 조건으로 지급하는 막대한 손해배상금이나 소송 비용 자체로 인해 경제적 부담을 짊어질 수 있음을 보여준다. ABC의 사례처럼 언론사가 소송 비용을 델 능력이나 사업적 고려로 승소할 확률이 있음에도 합의금을 지급하는 경우도 있다. 따라서 테크더트를 포함한 많은 언론사는 언론사를 소송 자체로부터 막아주는 반(反)전략적 봉쇄소송 법률이 강화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언론사의 잘못된 보도나 명예훼손에 수정헌법 1조가 지나치게 관대한 것이 아니냐는 시각 역시 존재한다. 하지만 수정헌법 1조를 옹호하는 입장에서는 언론사가 명예훼손 소송으로부터 자유로울 때 자유로운 언론과 공중의 알 권리가 보호될 수 있다는 태도를 고수하고 있다(Glasser, 2018). 또한, 고소인이 밝혀내기가 어렵긴 하지만 언론사가 보도 과정에서 진실을 묵인할 경우에는 여전히 명예훼손이 성립할 수 있다는 점 역시 수정헌법 1조가 무조건 언론사를 보호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보여준다.

최근 디지털 기술의 발달로 인한 소셜미디어상 가짜뉴스(fake news)나 알고리즘을 이용한 기사 생산은 언론사에 대한 명예훼손이나 수정헌법 1조를 둘러싸고 새로운 법적 쟁점을 만들어내고 있다. 아래에서는 가짜뉴스와 자동화 저널리즘(automated journalism)을 중심으로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논쟁 사항을 검토할 예정이다.

V. 가짜뉴스와 자동화 저널리즘 관련 법적 논쟁 검토

1. 가짜뉴스와 명예훼손

법적 관점에서 가짜뉴스는 정확하지 않은 정보를 포함하고 있지만 실제 뉴스 기사처럼 꾸며져 온라인에 발행된 (가짜) 기사로, 기사가 만들어질 당시 해당 정보가 진실인지 거짓인지에 대해서는 고려하지 않은 경우를 말한다(Royster, 2017). 노스캐롤라이나 대학교의 바바라 프리드먼(Barbara Friedman) 교수는 가짜뉴스란 의도적, 전략적으로 거짓을 포함해 공중을 호도하기 위한 뉴스 기사의 형태로 만들어진 정보라고 정의했다(Seidenberg, 2017). 소셜미디어의 발달은 이러한 가짜뉴스가 공중들에게 쉽고, 빠르게 전파되게끔 했다.

지난 미국 대통령 선거 기간 동안 워싱턴DC에 있는 한 피자 가게에서 총기사고가 발생했다. 총격범은 민주당 대선 후보 힐러리 클린턴(Hillary Clinton)이 아동 성 착취 범죄에 연루되어 있고 근거지가 해당 피자 가게라는 가짜뉴스를 보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Lopez, 2016). 하지만 피자 가게 주인이나 클린턴을 비롯한 관련된 자중에 가짜뉴스를 유포한 사람을 명예훼손으로 제소한 사람은 없었다(Seidenberg, 2017). 이는 가짜뉴스에 대한 명예훼손 소송이 쉽지 않기 때문이다. 대부분 가짜뉴스는 익명으로 배포되기 때문에 고소인의 명예를 훼손한 피고인을 밝혀내기 쉽지 않다. 피고인이 국가 바깥에 거주하는 경우도 많다. 또한, 가짜뉴스가 경제적 이익을 위해 만들어졌다는 사실을 고려해볼 때 피고인이 명예훼손 소송을 진행할 비용과 소송 결과로 인해 지급하게 될 손해배상금을 가지고 있지 못할 가능성 역시 존재한다(Seidenberg, 2017).

또한, 발언과 출판의 자유를 보장하는 수정헌법 1조와 통신품위법 230조항(Communication

Decency Act, 47 U.S.C. § 230)을 비롯해 현존하는 법적 체계가 가짜뉴스의 생산을 줄이기 어려운 구조로 되어있는 점 역시 가짜뉴스에 대한 법적 대응을 어렵게 한다. 앞서 살펴보았듯이, 수정헌법 1조는 공인이나 제한적 공인이 명예훼손에서 승소하기 위해 본인의 명예를 훼손한 정보를 만든 피고인이 현실적 악의가 있었는지를 입증하게끔 하고 있다. 고소인이 공인이 아닌 일반인인 경우에는 현실적 악의를 입증할 필요가 없지만 때로는 일반인도 논쟁 사안과 관련되어 있을 경우 제한적 공인(limited-purpose public figure)으로 간주하여 현실적 악의를 입증해야 하는 경우가 존재한다.

또한, 가짜뉴스에 주로 포함된 의견, 과장, 풍자, 추정 등이 모두 수정헌법 1조의 보호 하에 있어 명예훼손이 성립하기 어렵다는 점 역시 가짜뉴스에 대한 법적 소송을 어렵게 한다. 가짜뉴스로 인한 명예훼손 소송에서 승소한다고 하더라도 다른 가짜뉴스가 등장할 가능성 역시 배제할 수 없다. 하지만 가짜뉴스를 배포하는 사람에 대한 명예훼손 소송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아래 <사례>는 미국 기업 초바니와 가짜뉴스 및 음모론을 유포하는 사이트 인포워스(infowars) 운영자 간 명예훼손 소송 사건을 보여준다.

<사례> 초바니의 인포워스(infowars) 및 알렉스 존스(Alex Jones)에 대한 명예훼손 소송

미국 기업 초바니는 2017년 4월 24일 알렉스 존스(Alex Jones)와 그가 운영하는 음모이론을 유포하는 것으로 유명한 온라인 사이트 인포워스에 명예훼손 소송을 제기했다. 존스는 본인 이름으로 된 유튜브 채널을 통해 초바니 창립자 울루카야(Ulukaya)가 2014년에 5살 소녀를 성폭행한 바 있는 이민자 소년들과 연관되어 있다며, 해당 기업이 범죄 가능성이 높은 난민을 채용하고 있다는 내용의 영상을 배포했다. 이 채널을 구독하는 사용자 수는 2백만 명이다. 이 영상은 인포워스의 트위터 계정에서도 공유되었으며 존스는 이를 재공유했다.

초바니는 인포워스가 초바니의 명예를 훼손한 게시물을 추정이 아닌 사실처럼 보도하여 기업의 명성을 훼손하고 사회적 비난이 쏟아지게 했으며, 사용자들에게 기업의 제품을 사용하지 말 것을 장려해 결과적으로 기업의 사업적 이익에 손해를 끼쳤다고 주장했다. 또한, 존스와 그의 사이트가 영상을 제작하고 배포할 당시 이미 해당 진술이 거짓임을 알고 있었다며 현실적 악의를 가지고 있었다고 주장했다. 그 뒤 존스는 해당 게시물을 삭제하고 재공유하지 않을 것을 약속하며 유튜브 채널을 통해 사과하는 메시지

를 전달했다(Montero, 2017).

위의 사례는 (웹사이트가 정보 제작에 참여한 경우) 웹사이트에 대해서도 명예훼손으로 고소 가능하다는 점을 보여준다. 하지만 모든 플랫폼에 대해 명예훼손 소송이 가능한 것은 아니다. 뉴욕타임스 대 설리번(*New York Times v. Sullivan*, 1964) 판결에서 알 수 있듯이 언론사는 신문에 실린 모든 정보에 대해 (언론사나 직원이 그 정보를 직접 생산하지 않았더라도) 정보 제공자로서 법적 책임을 지고 있다. 하지만 웹사이트나 소셜미디어 플랫폼의 경우는 다르다. 통신품위법 230조항(Communication Decency Act, 47 U.S.C. §230, 이하 § 230)은 상호 컴퓨터 서비스(interactive computer service)가 정보 생산에 참여하지 않고 단순히 제3자의 정보를 배포하기만 한 경우 웹사이트는 정보 배포자(distributor)로서 명예훼손의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본다(Royster, 2017). 예를 들면 익명의 제3자가 웹사이트를 통해 배포한 광고에 거짓이 포함되어 있어 당사자에게 삭제 요청을 받았음에도 웹사이트가 해당 광고를 지우지 않은 경우에도 웹사이트는 명예훼손으로 처벌받지 않는다. 이는 자유롭게 정치적, 문화적 담론이 오갈 수 있는 환경조성을 위함이다. 하지만 해당 조항은 때로 거짓이나 불법적인 발언이나 게시물을 보호하는 문제 역시 가지고 있다(Royster, 2017).

로이스터(Royster, 2017)는 가짜뉴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웹사이트에 가짜뉴스 배포자로서의 법적 책임을 묻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주장하며 세 가지 방법을 논의한다. 첫 번째 방법은 법정이 § 230의 면책특권을 보다 제한적으로 웹사이트에 적용해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이다. 물론 웹사이트가 정보를 직접 생산하지 않는 한 웹사이트는 여전히 § 230의 보호 하에 있지만, 법정이 정보 생산자에 대해 보다 폭넓게 정의한다면 처벌이 가능하다. 하지만 가짜뉴스의 생산 및 배포가 여전히 헌법에서 보호받는 발언 및 출판의 자유에 해당한다는 점에서 또 다른 법적 논쟁이 생길 여지가 존재한다.

두 번째 방법은 웹사이트에 발행인으로서의 법적 책임을 적용하는 것이다. § 230이 만들어지기 전 모든 플랫폼 제공자는 해당 플랫폼에서 발행되는 정보에 대한 책임을 지고 있었다. 하지만 로이스터(Royster, 2017)는 해당 변화가 웹사이트에 법적 소송의 위협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게 해 사람들이 플랫폼에서 자유롭게 토론하는 것을 막고자 하는 동기를 제공할 수 있다고 본다. 웹사이트에 올라오는 모든 게시물과 정보를 검토하는 것 역시 현실적으로 가능하지 않다.

세 번째는 웹사이트가 해당 정보가 타인의 명예를 훼손할 수 있다는 점을 알고 있었거나, 알아야만 했던 경우에 한해 책임을 묻는 방법이 있다. 하지만 앞서 말했듯이 웹사이트가 플랫폼에 올라온 모든 정보를 검토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로이스터(Royster, 2017)는 디지털 밀레니엄 저작권법(Digital Millennium Copyright Act)의 통지-삭제(notice and takedown) 방침처럼 사용자의 신고 및 요청에 따라 부적절한 게시물을 삭제하는 방식이 가능하다고 주장한다. 이 경우 웹사이트는 의심스럽거나 신뢰하기 어려운 출처의 정보에 대한 알람을 받거나 감시하는 구조를 만들고, 해당 정보를 평가한 뒤 합당한 조치를 취하면 된다. 하지만 이 방법 역시 정보의 최종 삭제 여부를 웹사이트의 판단에 맡겨야 한다는 한계가 존재한다(Royster, 2017). 다른 방법으로는 공인 및 제한적 공인의 명예훼손에 적용되는 현실적 악의 원칙과 비슷하게 플랫폼 제공자나 웹사이트가 거짓을 포함한 정보가 플랫폼에 존재함을 알고도 의도적으로 이를 남겨둔 경우에 법적 책임을 묻는 방법이 있다.

2. 자동화 저널리즘과 명예훼손

디지털 기술의 발달로 언론사 내에서는 컴퓨터 기술과 컴퓨팅 사고력(computational thinking)을 활용한 컴퓨테이셔널 저널리즘(computational journalism)이라는 새로운 형태의 저널리즘이 등장했다(Coddington, 2015). 기사에 들어갈 정보 처리와 분석, 기사 작성과 배포를 알고리즘을 통해 자동으로 처리하는 자동화 저널리즘(automated journalism) 역시 이에 해당한다. 자동화 저널리즘에서 사람의 역할은 데이터 분석 내지는 기사 작성을 위한 초기 프로그래밍 단계를 제외하고는 다소 제한적이다(Carlson, 2015). 이미 로스앤젤레스 타임스나 AP와 같은 언론사 및 통신사는 알고리즘을 이용해 뉴스를 작성하기 시작했다(LeCompte, 2015). 이러한 변화는 로봇이나 알고리즘을 통해 작성된 기사와 관련해 새로운 법적 쟁점을 만들어냈다. 최근 루이스(Lewis)와 동료들은 알고리즘을 통해 작성된 기사가 타인의 명예를 훼손할 경우 누구에게 법적책임이 있는지를 분석한 논문을 Journalism and Mass Communication Quarterly에 발간했다.

그동안 학자들은 컴퓨터를 통해 이루어진 다양한 종류의 커뮤니케이션 및 산출물이 수정헌법 1조의 보호 대상이 되는지를 논의해왔다(Lewis et al., 2018). 우(Wu, 2013)

는 사람들 간 대화를 할 수 있게 도와주는 프로그램인 “커뮤니케이션 도구(communication tool)”와 블로그 포스트, 트윗, 비디오 게임, 신문 기사 등의 발언자의 생각이 담겨 있는 산출물인 “말(speech product)”을 구분한 뒤, 후자는 수정헌법 1조의 보호 대상이 된다고 주장한 바 있다. 밤바우어(Bambauer, 2014)는 수정헌법 1조가 보호하는 대상이 정보의 한 종류인 데이터까지 확장될 수 있다고 보았다. 또한, 컴퓨터 코드의 경우 해당 데이터가 사람들이 정보를 해석하는 데 도움을 주거나 정보를 제공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면 수정헌법 1조가 이를 보호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 두 관점으로 미루어볼 때 알고리즘으로 작성된 기사는 정보를 제공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으며 커뮤니케이션을 돕는 도구보다는 생각이 담겨 있는 “말”로 간주할 수 있으므로 수정헌법 1조의 보호 대상이 된다고 주장하는 것이 가능하다.

하지만 이 경우 몇 가지 법적 쟁점이 존재한다. 앞서 설명했듯이 헌법에 따라 공인 내지는 제한적 공인이 언론사를 명예훼손으로 제소하기 위해서는 언론사가 명예를 훼손한 진술의 책임을 지고 있고, 언론사가 해당 진술이 거짓이라는 점을 미리 알고 있었거나 진실을 묵인하는 현실적 악의가 있었다는 점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하다. 루이스(Lewis, 2018)와 그의 동료들은 알고리즘이 만들어낸 기사의 경우 고소인이 알고리즘이 해당 진술이 거짓임을 사전에 알았거나 진실을 묵인했는지를 밝혀내기 어려울 수 있다고 주장한다. 알고리즘은 단순히 짜인 프로그램대로 기사를 작성하기 때문이다.

또한, 알고리즘 자체가 기사 작성 전 정보를 확인하거나 인용문의 의미를 파악하도록 설계되지 않은 경우 이를 설계한 개발자에게 이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하는지 역시 명확하지 않다. 개발자가 알고리즘이 거짓 진술을 포함한 기사를 작성할 가능성에 대해 사전에 알았는지를 증명하기도 쉽지 않다(Lewis et al., 2018). 루이스(Lewis, 2018)와 동료들은 언론사에 사전에 알고리즘으로 작성된 기사를 검토하지 않은 책임을 묻는 것이 대안이 될 수 있지만, 언론사가 알고리즘이 작성한 기사의 사전 검토 과정에서 실수했다는 사실이 언론사의 현실적 악의를 보여주지는 않는다고 덧붙인다.

공인이나 제한적 공인이 아닌 경우 고소인은 보도에서 언론사의 부주의한 과실을 보여주는 것만으로도 언론사에 명예훼손에 대한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다. 루이스(Lewis, 2018)와 그의 동료들은 이 원칙이 알고리즘이 만들어낸 일반인에 대한 기사에 적용될 경우 언론사들이 알고리즘이 작성한 기사에 데이터 처리나 사실 확인 과정에서

합당한 관심을 두지 않았다는 이유로 소송에 쉽게 휩싸일 수 있다고 언급한다.

또 다른 법적 쟁점은 § 230에 따른 면책 특권이 언론사가 알고리즘으로 작성한 기사에 대한 명예훼손 소송을 피하고자 사용될 수 있는가이다. 구글처럼 제3자가 만든 정보를 알고리즘을 통해 배포하거나 사람들 간 대화할 수 있는 플랫폼을 제공하는 소셜미디어의 경우 다른 사람이 올린 게시물에 대한 법적 책임을 지지 않는다. 하지만 루이스(Lewis, 2018)와 그의 동료들은 언론사는 정보 배포자(distributor)가 아닌 제공자(provider)로서 이러한 면책 특권을 받기 어렵다고 덧붙인다. 비록 알고리즘이 기사를 작성하더라도 법원은 언론사가 그 과정에서 기존의 편집 관행과 저널리즘 원칙을 준수할 것을 요구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따라서 언론사는 § 230에 의존하기보다 수정헌법 1조를 통해 알고리즘이 생산한 기사에 대한 명예훼손 소송 위험으로부터 본인을 방어하는 것이 현실적이라고 저자들은 덧붙인다. 이를 위해서는 디지털 기술의 발전과 함께 변화하는 저널리즘의 모습에 맞춰 수정헌법 1조의 보호 범위와 적용 가능성에 대한 논의가 계속해서 이루어져야 한다(Lewis et al., 2018).

VI. 끝머리에

본 글은 미국 내 언론분쟁이 어떻게 조정되고 해결되는지를 살펴보기 위해 관련 기관과 법제 및 판례를 검토했다. 앞서 언급했듯이 미국의 수정헌법 1조는 정부나 의회가 개인의 발언과 출판의 자유를 제약할 수 없도록 보호하고 있다. 이로 인해 미국은 세계에서 개인의 표현의 자유가 가장 높은 국가 중 하나가 되었다(Lewis et al., 2018). 수정헌법 1조의 존재로 인해 미국 내에는 언론 보도로 인한 갈등 조정 및 피해를 구제하는 정부 기관이 존재하지 않는다. 국가 뉴스 위원회라는 독립적인 기구가 1973년부터 11년간 존속했으나 법적 강제력의 부재로 효과적으로 언론분쟁을 해결하지는 못했다.

미국 내에서 언론으로 인한 피해를 구제하기 위한 대부분의 시도는 법적 소송으로 이루어진다. 본 글은 수정헌법 1조와 가장 빈번하게 충돌하는 명예훼손을 중심으로 관련 사건 및 판례를 소개했다. 미국 내 수정헌법 1조는 공인 또는 제한적 공인에 대한 보도로 언론사가 명예훼손 소송에 휘말리는 것을 막아준다. 특히 공인 또는 제한적 공인인

고소인이 언론사가 사전에 해당 진술이 거짓임을 알고 있었거나 진실을 묵인했는지, 즉 언론사의 현실적 악의를 구체적인 증거와 함께 입증해야 한다는 사실은 고소인이 언론사에 대한 명예훼손에서 승소하기 쉽지 않다는 점을 보여준다. 하지만 여전히 언론 보도로 입은 피해나 갈등을 모두 법적 소송을 통해 해결해야 한다는 점은 고소인과 언론사 모두에게 부담이 되고 있다.

최근 디지털 기술의 발달로 다양한 커뮤니케이션의 양상이 나타나면서 가짜뉴스나 알고리즘을 이용한 언론사의 기사 작성 등은 수정헌법 1조의 적용 범위를 둘러싸고 새로운 법적 쟁점을 만들어내고 있다. 하지만 이에 대한 논의나 판례는 아직 완전히 정립되지 않았다(Lewis et al., 2018). 법적 소송이 많은 시간과 비용이 걸린다는 점을 고려할 때 빠르게 변화하는 커뮤니케이션과 새로운 디지털 기술을 사용한 언론 보도를 둘러싼 분쟁과 갈등을 조정하기 위해서는 법적 소송 외에도 이를 보완할 절차나 제도가 필요해 보인다.

- Bach, N. (2017, 8, 10). Fox News host Eric Bolling hits HuffPost journalist with \$50 million lawsuit. <Fortune>. Retrieved from <http://fortune.com/2017/08/10/fox-host-eric-bolling-sues-huffpost-jouranlist-for-50-million>
- Bambauer, J. (2014). Is data speech?. *Stanford Law Review*, 66, 57-120.
- Bowcott, O., & Watt, H. (2017, 4, 12). Melania Trump accepts Daily Mail damages and apology in libel case. <The Guardian>. Retrieved from <https://www.theguardian.com/us-news/2017/apr/12/melania-trump-accepts-damages-and-apology-from-daily-mail>
- Carlson, M. (2015). The robotic reporter: Automated journalism and the redefinition of labor, compositional forms, and journalistic authority. *Digital Journalism*, 3, 416-431.
- Coddington, M. (2015). Clarifying journalism's quantitative turn: A typology for evaluating data journalism, computational journalism, and computer-assisted reporting. *Digital Journalism*, 3, 331-348.
- Communications Decency Act, 47 U.S.C. § 230 (2016).
- Coronel, S., Coll, S., & Kravitz, D. (2015, 4, 5). Rolling Stone and UVA: The Columbia university graduate school of journalism report. <Rolling Stone>. Retrieved from <https://www.rollingstone.com/culture/culture-news/rolling-stone-and-uva-the-columbia-university-graduate-school-of-journalism-report-44930>
- Ember, S. (2017, 8, 16). A Times Editor Testifies in Defamation Suit Filed by Sarah Palin. <New York Times>. Retrieved from <https://www.nytimes.com/2017/08/16/business/media/a-times-editor-testifies-in-defamation-suit-filed-by-sarah-palin.html>
- Eramo v. Rolling Stone et al*, 209 F. Supp. 3d 862, 871 (W.D. Va. 2016).
- Glasser, C. J., Jr. (2018, 6, 28). Is the first amendment an excuse for sloppy, awful journalism?. <The Daily Caller>. Retrieved from <http://dailycaller.com/2018/06/28/first-amendment-excuse-for-sloppy-journalism>

- Hauser, C. (2017, 8, 10). ABC's 'Pink Slime' report tied to \$177 Million in settlement costs. <New York Times>. Retrieved from <https://www.nytimes.com/2017/08/10/business/pink-slime-disney-abc.html>
- Hawkins, D. (2017, 6, 28). Sarah Palin sues New York Times for defamation over editorial on mass shooting. <The Washington Post>. Retrieved from https://www.washingtonpost.com/news/morning-mix/wp/2017/06/28/sarah-palin-sues-new-york-times-for-defamation-over-editorial-on-mass-shooting/?utm_term=.e4b02cfccabb
- Jenkins, E. (1997). News councils: The case for and against. *Columbia Journalism Review*, 35, 38-39.
- Kludt, T. (2017, 6, 28). ABC settles suit over what it had called 'pink slime'. <CNN Money>. Retrieved from <http://money.cnn.com/2017/06/28/media/abc-bpi-settlement/index.html>
- LeCompte, C. (2015, 9, 1). Automation in the Newsroom. <Nieman Reports>. Retrieved from <http://niemanreports.org/articles/automation-in-the-newsroom>
- Lewis, S. C., Sanders, A. K., & Carmody, C. (2018). Libel by algorithm? Automated journalism and the threat of legal liability. *Journalism & Mass Communication Quarterly*, Advanced online publication. doi: 10.1177/1077699018755983
- Lopez, G. (2016, 12, 8). Pizzagate, the fake news conspiracy theory that led a gunman to DC's Comet Ping Pong, explained. <VOX>. Retrieved from <https://www.vox.com/policy-and-politics/2016/12/5/13842258/pizzagate-comet-ping-pong-fake-news>
- Masnick, M. (2017, 9, 6). Case dismissed: Judge throws out Shiva Ayyadurai's defamation lawsuit against Techdirt. <Techdirt>. Retrieved from <https://www.techdirt.com/articles/20170906/13431338159/case-dismissed-judge-throws-out-shiva-ayyadurais-defamation-lawsuit-against-techdirt.shtml>
- McKay, R. B. (1977). National news council as national ombudsman. *Saint Louis University Law Journal*, 21, 102-112.
- Mclaughlin, T. (2017, 6, 28). ABC TV settles with beef product maker in 'pink slime' defamation case. <Reuters>. Retrieved from <https://www.reuters.com/article/us-abc-pinkslime-idUSKBN19J1W9>

- Mclaughlin, T., & Huffstutter, P. J. (2017, 6, 5). Meat packer blames ABC's 'pink slime' for nearly killing company. <Reuters>. Retrieved from <https://www.reuters.com/article/us-abc-pinkslime-idUSKBN18W0KJ>
- Montero, D. (2017, 5, 17). Alex Jones settles Chobani lawsuit and retracts comments about refugees in Twin Falls, Idaho. <Los Angeles Times>. Retrieved from <http://www.latimes.com/nation/la-na-chobani-alex-jones-20170517-story.html>
- New York Times (2017, 4, 12). Melania Trump and Daily Mail settle her libel suits. Retrieved from <https://www.nytimes.com/2017/04/12/business/media/melania-trump-daily-mail-libel.html>
- New York Times v. Sullivan*, 376 U.S. 254 (1964).
- Nicolaou, A. (2016, 9, 25). BandLab buys 49% stake in Rolling Stone. <Financial Times>. Retrieved from <https://www.ft.com/content/a83158e8-8360-11e6-8897-2359a58ac7a5>
- Olson, K. K. (2017). The First Amendment in theory and practice. In W. Wat Hopkins (Ed.), *Communication and the law*, 23-36. Northport, AL: Vision Press.
- Royster, L. K. (2017). Fake news: Potentials solutions to the online epidemic. *North Carolina Law Review*, 96, 270-296.
- Seidenberg, S. (2017). Lies and libel: Fake news lacks straightforward cure. <ABA Journal>. Retrieved from http://www.abajournal.com/magazine/article/fake_news_libel_law
- Silha Bulletin (2017). University of Minnesota. Retrieved from <http://hdl.handle.net/11299/193038>
- Stempel, J. (2017, 8, 16). NY Times must face defamation lawsuit over professor's slavery comments. <Reuters>. Retrieved from <https://www.reuters.com/article/us-new-york-times-lawsuit/ny-times-must-face-defamation-lawsuit-over-professors-slavery-comments-idUSKCN1AV2FM>
- Trager, R., Ross, S. D., & Reynolds, A. (2016). *The law of journalism and mass communication*. Washington, DC: CQ Press
- Ugland, E. (2008). The legitimacy and moral authority of the national news council (USA). *Journalism*, 9, 285-308.

- Wu, T. (2013). Machine speech. *University of Pennsylvania Law Review*, 161, 1495-1534.
- Youm, K. H. (2017). Defamation. In W. Wat Hopkins (Ed.), *Communication and the law*, 85-120. Northport, AL: Vision Press.
- Yu, R. (2015, 4, 5). Columbia issues scathing report on 'Rolling Stone' rape story. <USA TODAY>. Retrieved from <https://www.usatoday.com/story/money/2015/04/05/columbia-report-on-rolling-stone-coverage/25338141>